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5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7.

발 의 자 : 강기윤 · 김희곤 · 박덕흠
김예지 · 서일준 · 백종헌
최재형 · 조명희 · 이용호
이종성 · 김태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순직군경 유족 중 전순위자 1명에 대하여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, 진료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순직군경 부모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못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진료비를 감면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.

이에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2조제7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7항제3호 전단 중 “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”을 “선순위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2조(진료) ① ~ ⑥ (생략)	제42조(진료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	⑦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<u>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</u> 1명.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,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3. ----- ----- <u>선순위자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⑧ (생략)	⑧ (현행과 같음)